

 국토교통부		<b>보 도 자 료</b>	
		배포일시	2018. 7. 4.(수) / 총 4매(본문3, 참고1)
담당 부서	토지정책과	담당 자	토지정책과장 김복환, 사무관 나정재, 주무관 이강민 ☎ (044)201-3402, 3406
보 도 일 시		2018년 7월 5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7. 4.(수) 11:00 이후 보도 가능	

## 부동산서비스 새옷 입는다

- 8월 중 우수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제 실시, 7월 인증요령 행정예고
- 인증마크 부여, 부동산 관련 정책 지원, 정부 보유 정보제공 등 지원

□ 기획, 개발, 임대, 관리, 중개, 평가 등 부동산 또는 관련 서비스를 묶어서 제공하는 사업자는 앞으로 정부의 우수인증을 받을 수 있다.

○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지난 '17년 제정된 부동산서비스산업진흥법이 시행됨('18.6.20.)에 따라, 8월 중에 “우수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제도(이하 “우수인증”)”를 실시하고 인증 사업자에 대하여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.

\* 부동산서비스산업은 부동산 관련 기획, 개발, 임대, 관리, 중개, 평가, 자금 조달, 자문, 정보제공 등(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)

○ 국토교통부는 우수인증 시행을 위해 7월 초 「우수 부동산서비스 인증요령(국토부 고시)」을 행정예고하여 관계기관 및 대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.

○ 이후 인증요령을 제정·공포하고, 인증업무 대행기관 지정, 인증 접수 공고 등을 거쳐 8월 중 우수인증을 실시하게 된다.

□ 그동안 부동산서비스산업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영세한 사업 여건, 부정적 이미지 등으로 서비스의 질이 국민의 눈높이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.

\* 중개업 평균 종사자수 1~4인 79%('16)수준이며, 최근에도 다운계약, 불법 전매, 자전거래 등 불법거래 중개사 개입 의혹이 빈번하게 언론에 제기

○ 이에 국토교통부는 우수인증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우수한 부동산 서비스를 지원함과 동시에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준수 및 권고사항을 마련하여 다각도로 부동산서비스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.

□ 이번에 행정예고하는 「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」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.

- ① 모든 유형의 부동산서비스사업자를 대상으로 하여,
- ② 운영전략, 서비스 안정성, 법규준수도 등의 인증기준으로,
- ③ 인증심사대행기관을 통한 평가 및 인증 실시,
- ④ 소비자 피해 예방 등 서비스 개선을 위한 준수·권고사항 마련,
- ⑤ 2년마다 인증유지 여부 정기점검 실시 등

○ 특히, 개인사업자 등 소상공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자본금, 매출액 등 사업규모에 대한 평가를 배제하고, 소상공인의 인증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(기업 70점 이상, 소상공인 60점 이상)하였다.

□ 또한 국토교통부에서는 인증요령과 별도로 우수 사업자 지원을 위해 인증 실시 전까지 인센티브(안)을 확정하여 제공할 예정이며, 지속적으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.

< 우수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제도 인센티브 제공(안) >

공통	① 우수인증 마크 제공, 정부·공공기관 홈페이지 게재 등 홍보 ② 정부 보유 부동산 정보 맞춤형 제공
거래관련	③ LH 전세임대, 매입임대 시 추천, 우선 매입 ④ HUG 전세금 반환 보증상품 판매 수수료 상향 ⑤ 국토부·산하 공공기관 관사, 사무실 계약 시 우선 활용
개발관련	⑥ HUG 분양보증 및 PF 보증 시 가점 부여

-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“우수부동산 서비스사업 인증제를 통해 국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질이 한단계 향상 되기를 기대한다.”면서,
  - “우수인증을 통해 사업자에 대한 지원은 물론 시장 건전화를 유도하여 국민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다수의 인증업체가 생겨나길 기대한다.”라고 밝혔다.

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 홍지표씨	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나정재 사무관(☎044-201-340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--	---	--

## 참고 1

## 우수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(국토부 고시) 주요 내용

### □ 추진 배경

- '18.6월 부동산서비스산업진흥법(6.20) 시행에 따라 우수 부동산 서비스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인증제도 도입(법 제15조)
- 이를 위한 「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」 제정(국토부 고시)

### □ 주요 내용

규정사항	내용
① 인증기준 (안 제3~5조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기준) 운영비전·전문성·법규 준수도·서비스 실적·소비자 보호 등</li> <li>- (평가) 70/100점 이상(소상공인 60점 이상)</li> </ul>
② 인증절차 (안 제6~9조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신청서 제출 → 심사(60일) → 인증서 발급</li> </ul>
③ 인증마크 도안 (안 제10조)	<div style="display: flex; justify-content: space-around; align-items: center;"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  <p>인증마크</p> </div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  <p>인증마크 구성 및 의미</p> </div> </div>
④ 인증사업자 준수사항 (안 제11조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통보의무) 파산·사망, 서비스 변경, 서비스 제공 불가능 시 즉시 통보</li> <li>- (준수사항) 허위정보제공금지, 소비자 피해구제, 연계사업자 지도·점검, 권고사항 이행노력 등</li> </ul>
⑤ 인증사업자 점검 (안 제12조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기준) 계획이행도, 법규 준수도, 고객 만족도, 서비스 실적, 소비자 보호 등</li> <li>- (시기) 2년마다 정기점검(문제시 수시점검)</li> </ul>
⑥ 인증심사위원회 (안 제16~17조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심사) 위원그룹(30인 이상) 중 심사시마다 9인 이내로 위원회 구성(과반 출석, 과반 찬성 의결)</li> <li>- (심의사항) 인증심사, 점검 심사, 이의신청 심사</li> </ul>
⑦ 인증 수수료 (안 제 19조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인증) 200만원, 소상공인은 50% 감면</li> <li>- (점검) 150만원, 소상공인은 50% 감면</li> </ul>